##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75

발의연월일: 2020. 7. 20.

발 의 자:이헌승·전봉민·이주환

김은혜 · 정희용 · 이양수

김도읍·정동만·金炳旭

최형두 · 최춘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등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,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차량 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(2016. 7. 7)한 점, 철도차량 내에서 범죄가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흡연하는 행위,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나, 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철도차량 중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, 철도 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영상물 상영·방송 등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내의 범죄 및 위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제39조의3제1항·제2항, 제47조제3항 및 제8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).

###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방지"를 "방지, 범죄 예방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설치 기준, 방법"을 "설치 기준·방법, 관리기준"으로, "국토교통부령"을 "대통령령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동력차"를 "동력차 및 객차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운전업무종사자"를 "운전업무종사자, 여객"으로 하며, 같은 조제7항 중 "영상기록의 보관"을 "영상기록의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"으로 하다.

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한다.

제82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3(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	제39조의3(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
운영 등) ① 철도운영자등은	운영 등) ①
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, 교	
통사고 상황 파악, 안전사고 <u>방</u>	<u>방</u>
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	지, 범죄 예방
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	
상기록장치를 설치·운영하여야	
한다.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	
설치 기준, 방법 등은 국토교통	<u>설치 기준·방법, 관리기준대</u>
<u>부령</u> 으로 정한다.	<u>통령령</u> .
1.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	1
정하는 <u>동력차</u>	<u>동력차 및 객차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	2
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	
경우 <u>운전업무종사자</u> 등이 쉽	운전업무종사자, 여객
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	
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	
한다.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	⑦
제공과 그 밖에 <u>영상기록의 보</u>	<u>영상기록의 보</u>

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관 기준 및 보관 기간-----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(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) 제47조(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) ① • ② (생략)

<신 설>

제8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82조(과태료) ① -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11. (생 략) <신 설>

12. ~ 18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 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 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1의2.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 한 자

12. ~ 1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